

# 주식분할과 병합의 절차 해설

김재호 전문위원

jhkim@klca.or.kr / 2087-7159

## I 주식분할의 의의

‘주식분할’이란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회사 재산의 변동 없이 1주의 주식을 2주 또는 5주로 종전보다 많은 수의 주식으로 세분화하여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회사의 발행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이 1주권에 표창된 주식수를 세분하여 여러 매의 주권으로 만드는 ‘주권분할’과는 구별된다.

2011년 개정 상법에서 무액면주식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실무에서 ‘주식분할’은 일반적으로 곧 ‘액면분할’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 상법에서 무액면주식을 도입함에 따라 주식분할의 의미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경우에 각각 이를 달리한다.

주식분할 즉, 실무에서의 액면분할은 주권의 액면가를 일정비율로 감소시키고 그 역의 배수로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500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발행주식수를 10배로 늘리는 것을 말하며 이런 경우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무액면주식에는 액면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무액면주식의 분할은 자본금, 자산 등에 관계없이 단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

지만 이는 종전의 주식 수에 추가하여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주식을 세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분할과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의 구별에 큰 의미가 없다.

주식의 액면분할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주식의 거래가 부진하거나 신주의 발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주로 행해진다. 이런 경우에 회사는 액면분할을 함으로써 1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거래를 활발하게 촉진할 수 있는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액면가액 5,000원짜리 1주를 10주로 나누어 500원짜리 10주로 만드는 경우로 이론적으로는 액면분할에 따라서 어떠한 자본이득(Capital Gain)도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이 시장에서 20,000원에 거래될 경우 이를 액면가액 500원의 주식으로 액면분할 한다면 그 주식의 시장가격은 액면분할한 비율만큼으로 낮아져서 1/10 수준인 2,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다시 거래되고 주주의 자본이득은 발생되지 아니한다.

최근 개정상법의 시행으로 무액면주식의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상장회사 실무에서는 아직 발행된 예가 없다. 그러나 이후 무액면주식의 발행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무액면주식을 포함하여 주식의 액면분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실무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주식분할은 곧 액면분할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 II 주식분할(액면분할)의 요건과 절차

### 1. 요건

#### (1)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상법 제329조의 2 ①). 액면주식을 분할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1주당 금액과 수권주식수가 부족할 경우 이를 확대해야 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을 요한다. 그러나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이를 분할할 때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므로 그 한도가 충분하면 굳이 정관변경을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칠 이유가 없으나, 상법은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34조).

이처럼 무액면주식의 분할은 정관이나 자본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발행주식수만 증가시키므로 신주발행과의 균형상 이사회결의로 족하다는 견해도 있다(권기법).

#### (2) 정관의 변경

액면주식을 분할하려면 정관상 규정하고 있는 1주당 금액(액면가)을 변경하여야 하고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부족할 경우 이를 늘려야 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상법 제434조).

참고로 무액면주식을 분할할 경우에도 분할의 결과 발행할 주식수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수(상법 제289조 ① 3호)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요한다.

#### (3) 주식분할의 제한

주식분할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i)주식분할은 자본금을 변경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액면주식을 분할할 경우에는 1주의 금액을 종전보다 인하하

여야 한다. ii)미발행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의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식분할을 결의하려면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정관변경을 먼저 하여야 한다(상법 제329조의 2, 제289조 ① 3호). iii)액면주식의 경우 주식분할 후 액면가는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29조 ③, 제329조의 2 ②). iv)주식분할은 동일한 종류주식 내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v)주식분할로 인하여 단주의 발생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으나 상장회사 액면분할의 경우는 액면가의 정수배로 나뉘지는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및 5,000원으로만 액면가를 정해야 하므로(유가증권상장규정 제104조, 동 세칙 제52조) 단주는 발생되지 아니한다.

### 2. 절차

#### (1) 이사회 결의 및 공시·신고

회사가 액면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액면분할의 내용과 주주명부 폐쇄를 위한 기준일 등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해야 한다(상법 제329조의 2 ①, 제362조). 액면분할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당일에 거래소에 이를 신고·공시하여야 한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 (2)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

회사는 주권소지자 등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기준일로부터 2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일간지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설정되었음을 공고해야 한다(상법 제354조 ④).

#### (3) 주주총회소집 통지 및 공고

명의개서 대행회사에서 기준일 현재로 주주총회에

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회사는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 ①).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를 소유한 소액주주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각각 2회 이상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 4 ①, 상법 시행령 제31조).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참고서류를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시 포함하거나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명의개서 대행회사 등의 지정장소에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비치해야 한다(상법 제448조, 상법 제542조의 4 ③, 상법 시행령 제31조 ④ 내지 ⑤, 증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 제3-15조 제3항).

**(4) 주주총회 특별결의**

액면분할은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1주당 금액과 발행예정주식수를 증가시켜야 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상법 제329조의 2 ①,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의 방법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가결된다(상법 제434조, 제435조 ②).

**(5) 주주총회 결의 결과의 신고 등**

액면분할을 위한 주주총회가 종료되면 회사는 총회 결과를 거래소에 당일 신고하여야 한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주주총회의 결과는 대행사에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6) 주권 교체발행 의뢰**

액면분할로 인해 주권의 기재사항이 달라지므로 회사는 주주가 제출한 주권에 갈음하여 새로운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액면분할에 따른 변경등기가

종료되면 회사는 명의개서대행사에 주권의 교체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주권교체발행을 의뢰할 때에는 액면분할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과 액면분할 후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7) 주식 매매거래 정지공고**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액면분할을 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해서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29의 2 ③).

**(8) 액면분할 등기**

액면분할에 따른 1주당 금액(액면가) 및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변경된 사항은 주식분할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등기해야 한다. 액면분할 후 등기 신청시 첨부서류는 정관, 주식분할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상법 제440조에 의한 서면(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해서는 각별로 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서류) 등이다(상업등기법 제87조).

**(9) 주권 교체발행 의뢰**

액면분할에 따른 주권의 교체발행을 위해서는 통일규격주권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주권용지 사용신청은 대행기관을 통하여 하면 된다.

**(10) 변경상장신청**

통일규격주권용지에 신주권의 가쇄가 완료되면 견양주권을 첨부하여 거래소에 신주상장을 신청한다. 주주로부터 주권 교부의 청구가 있으면 명의개서대행기관은 주권의 이면에 주주명을 기재하고 이를 교부한다.

### 〈액면분할 진행일정〉

순서	진행절차	소요기간	관련법규	비고
1	액면분할 및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D-41	상법 제362조, 제329조의2	
2	액면분할 이사회 결의사항 신고	D-41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①2개4)	거래소, 당일
3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사항 및 기준일(주주 명부폐쇄일) 신고·공시	D-4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5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①3라	거래소 대행사
4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	D-40	상법 제354조	기준일 2주간 전
5	주주총회 개최 통보	D-38		대행사
6	주주명부 확정기준일	D-25	상법 제354조	
7	주주확정 및 주주명부 수령	D-17		대행사
8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주주총회 참고서류 공고 및 비치)	D-15	상법 제363조, 제542조의4	금융위, 거래소 (주총 2주전까지)
9	주주총회 개최(정관변경)	D	상법 제329조의2, 제434조	권면액 변경, 주총 특별결의
10	주주총회 결과공시	D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①3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5조	거래소
11	구주권제출 공고 및 통지	D+1	상법 제329조의2·제440조~제444조	구주권제출만료일 1개월 전까지
12	주주총회결과 통보	D+1		대행사, 당일
13	주권 교체발행 의뢰	D+1		대행사
14	주식매매거래정지 공고	D+20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5조	거래소, 상장 전일까지
15	액면분할의 효력발생일	D+32		구주권제출공고기간 만료일의 익일
16	변경상장신청	D+32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 제51조	거래소(효력발생후 지체없이)
17	액면분할 등기	D+32	상법 제31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상업등기법 제87조	효력발생후 2주내
18	가채계약 및 주권용지교부 신청	D+35	통일규격증권등 취급규정 제4조, 제8조, 제9조	가채소, 대행사
19	주권가채 및 납품	D+40	상법 제356조	
20	주권교부 개시일	D+42	상법 제329조의2 제3항	

\* 주) 법정기간이외의 소요기간은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단축·연장이 가능함.

### 3. 효력발생시기

주식분할은 주주에 대한 공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29조의2 ③). 그러나 액면분할의 경우 회사 채권자와는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며 공고기간의 만료만으로 분할의 효과가 발생한다.

### 4. 효과

주식분할의 결과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고 같은 비율로 각 주주의 소유주식도 증가하나 회사의 자본금, 재산에는 변동이 없고 각 주주의 지분에도 실질적인 변동은 없다. 따라서 액면분할 전후의 주식은 동

일성이 유지되므로 분할 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분할 후의 신주식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며(상법 제339조)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가 받을 주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 ③).

## III 주식병합

### 1. 주식병합의 의의

주식병합이란 주식분할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 개의 주식을 합하여 종전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회사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주를 3주로 합하는 것이다. 주식병합은 통상 단주를 발생시키고

주식의 유통성을 줄여 각 주주의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즉 자본의 감소(상법 제440조), 합병(상법 제530조 ③), 분할(상법 제530조의 11 ①)의 경우에 한해 주식을 병합할 수 있다.

‘주식병합’은 10주권짜리 10매를 100주권짜리 1매로 통합하는 것처럼 단순히 표창하는 주식 수만을 증가시키는 ‘주권병합’과는 다르고, 액면주식의 경우 주식수는 그대로 두고 1주의 액면금액만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주금액의 변경’과도 구별된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원인 주식 1주를 액면가 200원인 1주로 하는 것은 단순한 주금액의 변경이고, 액면가 100원인 3주를 액면가 200원인 1주로 하는 것은 주식병합과 주금액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식병합을 넓게 이해하는 경우에는 액면병합까지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인 2주식을 액면가 1,000원의 1주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실무에서는 ‘액면병합’이라 하는데 이는 액면분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액면가 500원의 주식 10주를 병합하여 1주의 금액을 5,000원으로 하거나 액면가 100원의 주식을 200원이나 500원으로 병합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 2. 주식병합의 요건 및 절차

주식병합은 i)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병합과 ii)회사의 합병·분할·주식교환·주식이전시의 주식병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의 경우는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4조에서 규정하는 자본금 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병합이 이뤄진다. 따라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이익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법 제44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제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별 주주와 질권자에게 주권을 제출해 줄 것을 통지·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40조). 이는 신주권을 수령할 자를 파악하고 구주권을 회수하기 위해서이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를 위해 무액면주식을 병합할 필요는 없다. 주식병합의 절차 없이 자본금 감소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 그러나 감자환급금의 지급이나 유통주식수의 축소 등의 목적으로 감자를 할 경우에는 무액면주식의 병합을 수반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사의 합병시의 주식병합은 합병비율이 1:1이 아닌 때에는 합병비율에 따라 해산회사의 주식병합이 이뤄진다(상법 제530조 ③, 제440조 내지 제444조).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물적분할을 제외하고는 분할신주의 배정교부를 위하여 주식병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때가 있다(상법 제530조의 5 ① 4호, 제530조의 6 ① 3호, 제530조의 11 ①, 제440조 내지 제444조). 특히, 분할회사가 소멸하는 소멸분할의 경우에는 구주권의 획일적 실효처리 및 분할 후 신주권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식병합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식교환 또는 이전의 경우에도 구주권의 실효 및 신주권의 교부를 위하여 주식병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360조의 8, 제360조의 11, 제360조의 19, 제360조의 22).

그러나 액면가 100원인 주식 5개를 액면가 500원인 1주식으로 병합하는 이른바 액면병합의 경우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 3. 주식병합의 효과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기간의 종료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예외적으로 채권자 이익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441조). 그러나 합병 또는 분할시의 주식병합은 해석상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를 조건으로 구주권 제출기간의 종료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주식교환시에 구주권의 실효 및 주식병합은 주식교환일에 효력이 발생하나(상법 제360조의 8 ① 3호 및 ②, 제360조의 11 ①), 주식 이전시에는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주식이전 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60조의 19 ① 3호 및 ②, 제360조의 22).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 제출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주권은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기존 주주들은 단주의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병합 비율에 따라 신주식의 주주가 되고 신주권교부청구권을 갖는다(상법 제443조). 기존 주주가 받는 신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표창하고 그와 동일성을 유지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 다 51887 판결).

자본금의 감소를 위해 액면주식을 병합하는 때에는 병합으로 감액된 액면총액만큼 자본금이 감소한다.

무액면주식의 병합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감소되거나 감소되는 자본금과 무액면주식의 병합과는 관계가 없다.

주식병합은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만 수권주식의 총수나 미발행주식총수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다. 주식병합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② 3호 및 ④, 제183조).

#### IV 주식분할에 관한 Q&A

##### 1. 액면분할과 주식분할의 차이는?

액면분할이란 주식의 액면금액을 현재보다 줄이는 것을 말하고, 주식분할이란 주식을 분할하여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액면금액이 5,000원인 주식을 2,500원으로 줄이면 주식 수는 이전보다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주식분할은 주권에 액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 현재 갖고 있는 주식 1주를 2주 혹은 3주로 교환하는 것이다. 액면분할이나 주식분할 모두 자본금의 변동 없이 주식 수만 늘어나게 된다.

##### 2. 회사가 액면분할을 하는 이유나 목적은 무엇인가?

주식의 액면분할은 일반적으로 어떤 주식이 시장에

서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주식거래가 부진하거나 신주의 발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주로 행해진다. 이런 경우에 액면분할을 함으로써 1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3. 주식분할과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의 구분

주식분할과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그리고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새로운 대가 없이 주식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상호 비슷하다. 이들은 액면주식의 경우와 무액면주식의 경우에 있어 이 3가지 제도의 이동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i)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를 보면 주식분할은 곧 액면분할을 의미하므로 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주식배당과는 확연히 구별되고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주식배당도 역시 그 성격을 달리한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법정준비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를 액면가로 나눈 수의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임에 대하여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이익처분을 하고 그 금액을 액면가로 나눈 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재원을 달리하는데 차이가 있다.

ii)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를 보면 주식분할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전혀 영향을 주는 것이 없이 주식을 나누는 방법으로 발행주식의 수를 늘이는 것임에 대하여,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준비금의 감소와 같은 금액의 자본금의 증가를 초래하는 점에서 주식분할과 다르다. 또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주식의 수와는 무관하게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자본전입을 하면서 동시에 주식을 분할하면 액면주식 발행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전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무액면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배당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굳이 주식배당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구상해 보자면 회사가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을 하면서 동시에 신주발행을 하여 이익배당을 회수하면 주식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실익은 없다. ☑